

2022

12

통권 472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 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지난 11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기사 33면)



지난 11월 14일 일본의 가정폭력 관련 연구 학자들이 본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법제와 상담소의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일본의 향후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관련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백신으로 부정부패 예방하자!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알스트로메리아꽃〉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 ②

21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③

22 •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⑦

24 • 가정폭력상담실

27 • 어떻게 할까요

30 • 결혼과 인생(229) 영화 이야기

코다 _ 김용언

32 • 좋은 책

새로 들어온 책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6 • 소송구조



심포지엄 개최와 화상상담의 시작을 보며, 저무는 한 해의 끝에서 다시 ‘가정’을 생각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어김없이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난 몇 년간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맞닥뜨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여러 사건 사고들로 많은 이들이 고통에 처해있는 가운데 2022년이 저물어가고 우리 모두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중입니다. 상담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담소는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은 물론 법률구조, 교육 등 전반적인 활동에 큰 변화를 겪어야 했고,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와 맞물려 가정에서부터 근본적인 위기를 겪고 있음을 상담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상담소 역사상 처음으로 내담자와 만날 수 없는 시간도 있었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가정문제, 가족법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등 사람들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상담소는 새로운 길을 열어 비대면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한 심포지엄의 개최 등

으로 사람들과 만남의 장을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상담소 강당에서 이전과 같이 심포지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를 통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출산제 도입’이라는 특정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강당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논의의 장이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문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면접상담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거리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상담과 법적 지원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 15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화상상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상담소의 역사 속에서 그간의 변화보다 더 크고 깊은 변화를 지난 몇 년 동안 겪고 있는 듯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이 세계를 바꾸고 있으며 가정문제 상담 또한 예외 없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상상담에는 대체로 3, 40대 젊은 층과 회사원이 많고 이혼과 부부갈등에 관한 상담이 많아 이들에게도 상담소가 절실했음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내담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깊어지는 요즘, 마음을 시리게 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살해 후 자살’이나 생활고로 인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스러져간 가정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바로 얼마 전 신촌에서 거의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거의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법과 제도와 정책의 미비함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위해 전 우주가 필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 사람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일의 어려움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정과 그 가정의 소중함까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지킬 수 없다면, 사람의 근원이 되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지 않는 사회와 국가라면 희망이 없다 할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함,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권의 소중함에 일찍부터 주목해 온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정’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정의 형태가 변하고, 다양해지고 가족구성원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해도 여전히 가정은 한 사람의 근원으로 또 한 사회의 근간으로 자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귀하고 중함을 가장 잘 아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써 상담소의 소임이 있음을 언제나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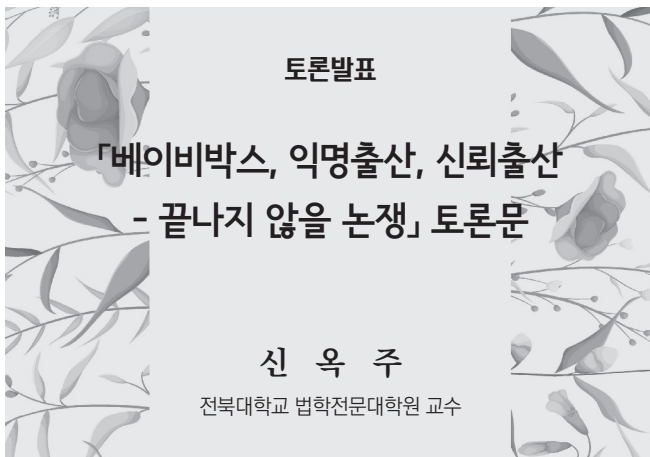
올 한 해를 보내는 동안 변함없이 상담소에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신 많은 분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특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 (2)



1. 신뢰출산제도의 도입후 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독일에서 2014년 임신갈등법을 통해 신뢰출산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산모의 완전한 익명성이 보호되는 베이비

박스, 익명교부 등도 관용되고 있다. 2017년 법에 대하여 사후적 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¹⁾ 그러나 2017년의 평가에 서는 2015년과 2015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시된 한계 가 있었다. 2019년 연방여성가족노동청소년부는 제2차 입 법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이루어졌다.²⁾

첫째, 신뢰출산을 결정한 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 다. 예컨대 2018년 출신증명서 수와 현 상황을 보면 출신 증명서 수는 126개, 그 중 5건이 익명성을 포기하고 117건 에서 신뢰출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둘째, 새로 만들어진 신뢰출산법제는 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의 제정 이전에는 부모를 알지 못 한 채 태어난 아동의 수가 2000년 46명에서 2013년 147 명으로 증가하였다. 법 시행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익명출산 아동의 수는 2014년 124명, 2015년 157명, 2016년 151명으로 총 432명이고, 신뢰출산 아동의 수는

*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본소 강당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 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를 주제로 창립 6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난 <가정상담> 11월호에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내용을 실은 데 이어 토론문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1) Sommer, J. / Ornig, N. / Karato, Y. (2017): „Evaluation zu den Auswirkungen aller Maßnahmen und Hilfsangebote, die auf Grund d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ergriffen wurden“. URL: <https://www.bmfsfj.de/blob/jump/117408/evaluation-hilfsangebote-vertrauliche-geburt-data.pdf>

2) Interval, Endbericht, Aktualisierung von Daten über Beratung zur vertraulichen Geburt sowie über Auswirkung des SchHiAusbauG auf Formen der Kinderabgabe, 2019, 4.16.

65명, 88명, 117명으로 총 270명이었다. 법이 시행된 해인 2014년의 경우 신뢰출산 시행이 만 1년이 되지 못한 기간임을 고려할 때 법이 신뢰출산을 위하여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뢰출산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중요하여진 것은 임신부가 익명출산과 신뢰출산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임신부의 필요에 상응하는 상담을 임신초기에 하는 것이다.

셋째, 신뢰출산 상담건수는 조금 줄었으나 현재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못했다. 2014.5.부터 2018.12.까지 2,249명의 여성이 신뢰출산상담을 하였다. 시기를 구분하여보면, 2014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277건 및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상담건수 107건,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878건(2016년 10월 이전에 시작한 상담건수 13건 포함)이다. 년평균 약 480건이다. 법 시행후 2016년까지 평균은 529건, 2017년과 2018년 평균건수는 년 43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2,249명의 신뢰출산 내담자가 상담 후 진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24.2% 아동과 함께 사는 삶 선택, 13.7% 일반입양 선택, 2.0% 신뢰출산 선택했으나 후에 익명성 포기(아동과 함께 살거나 일반입양선택), 21.8% 신뢰출산 선택, 4.5% 익명출산선택, 11.9% 임신중절 선택, 1.9% 상담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 없음, 14.8% 상담소와 접촉단절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상담소가 알 수 없음, 5.0% 어떠한 언명도 하지 않음.

넷째, 신뢰출산제도와의 관련성에 개하여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독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신생아 수의 변화³⁾가 나타났다.

terre des hommes
hilfe für Kinder in Not

Jahr	Tot aufgefundene Neugeborene	Lebend aufgefundene Neugeborene	Unklare Fälle	Gesamtzahl
2006	32	6		38
2007	26	10		36
2008	29	8	1	38
2009	24	12		36
2010	14	2		16
2011	16	9	1	26

2. 우리나라에서 신뢰출산제도 도입의 경우 고려해야 할 점

첫째, 대상그룹설정이 중요하다.

독일의 신뢰출산을 모델로 한 것으로써 제1차적 목표그룹은 임신중절보다는 출산을 선택한 여성으로서 완전한 익명성을 위하여 아동을 베이비박스 또는 기타 장소에 유기하는 여성이다. 일정기간 여성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아동의 생명권과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고 여성과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둘째, 유기적 · 전문적 상담제도 구축

독일의 경우 성, 재생산과 관련이 있는 상담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상담권이 보장된다. 일반상담이 낙인효과를 예방 및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에서 대담자가 원하는 경우 일반건강 및 재생산 상담, 임신중절을 원하는 경우 임신중절상담, 신뢰출산을 원하는 경우 신뢰출산상담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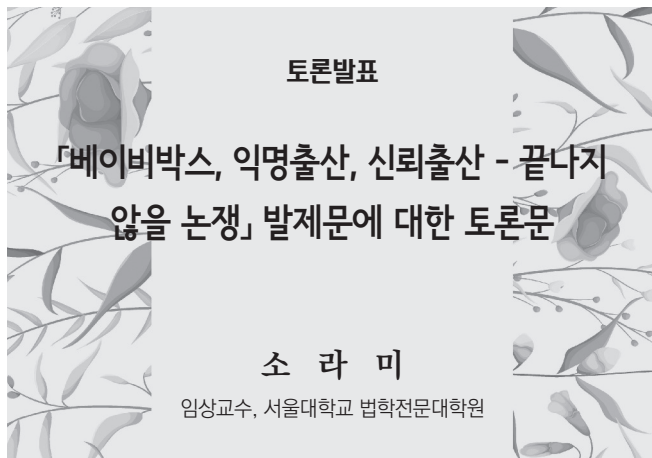
신뢰출산상담의 경우, 출산을 전제로 하며 직접입양보다는 입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므로 상담은 가능하면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임신갈등상황인 사회적 사유, 경제적 사유, 장애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맞춤형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예컨대 입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법률전문가, 심리상담가 등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Jahr	Tot aufgefundene Neugeborene	Lebend aufgefundene Neugeborene	Unklare Fälle	Gesamtzahl
2012	24* 27**	10	1	35 bzw. 38
2013	21	9	1	31
2014	16	7		23
2015	23	7	1	31
2016	9	4	1	14
2017	19	4		23
2018	13	4		17
2019	12	4		16

3) <https://www.tdh.de/was-wir-tun/themen-a-z/babyklappe-und-anonyme-geburt/zahlen-und-fakten/>

셋째,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박스나 기타 장소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위험에 처해있다. 신뢰출산과 더불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임신부와 그 배우자, 출산기관 그리고 임신부나 배우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을 안 사람(대부분 자가출산시 조산사가 해당) 등이 의무적 통보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출생통보 후 임신부는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뢰출산을 한 경우의 아동출생신고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언명이 불필요하다.

이 밖에도 산모의 사생활의 비밀을 위한 익명성보호와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 실현 사이의 조화. 민법상 일반입양, 특례법상 입양, 그리고 신뢰출산법(가칭) 상 입양의 구조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익명출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익명출산·비밀출산·신뢰출산 제도들은(이하 '익명출산' 제도로 통칭함) 발제자께서도 언급하고 있듯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될 아동의 권리를 침해·제한한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

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고, 더불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대법원 또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모든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어떠한 법률로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시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출생등록될 권리의 기본권적 성격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과 동시에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출생등록제'의 도입과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익명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아동인권단체가 노력한 결과 현재 국회에 출생통보제의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다수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출생등록될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기초로 설계한 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써 익명출산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재생산권 관점에서 검토

베이비박스 또는 익명출산이 필요한 배경으로,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영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공개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주로 언급된다. 하지만 익명출산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익명출산을 통해 여성의 인격권·행복추구권·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거쳐서 익명출산까지 오기 이전 단계에

4) 의안번호 2108798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의안번호 2108795 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의안번호 2107554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의안번호 2107712 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의안번호 2102048 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서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권이란 여성의 피임, 임신, 출산에 관한 선택권 및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절, 출산, 양육 전반에 관한 결정권 등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성과 재생산에 관한 종합적인 건강 권리를 뜻한다.⁵⁾ 즉 임신을 중단할 권리와 출산 및 양육을 선택할 권리는 모두 여성의 재생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영아 유기 이전에, 출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이 안전하고 충분하게 보장된다면 익명출산이 논의되는 상황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익명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이미 수 십 년 동안 여성의 임신중단권이 보장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⁶⁾ 이후 임신중단의 사유, 절차,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제도의 설계와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본 토론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정부부처가 합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신중단 관련 제도가 도입·시행되길 바란다.

3. 미혼모지원 정책의 지면

해외입양 대상아동의 100%가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미혼모의 출산을 은폐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해왔고, 미혼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것을, 해외입양을 보낼 것을 강권해온 결과를 드러낸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정부의 지원 정책의 부재가 반영된 결과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원칙적으로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며(협약 제7조),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협약 제9조).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서는 시설보호는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에게는 이러한 아동보호기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즉 시설보호가 우선으로 적용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베이비박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전제로 이를 대체할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제도의 도입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최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임신중단할 권리의 보장, 양육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익명출산제도가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4.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의 조화 가능성

발제자는 익명출산을 허용한 결과 영아유기와 살해가 감소하였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신생아의 살해나 유기 건수가 베이비박스 등이 설치되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이 아동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⁸⁾ 우리나라의 영아살해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영아살해와 베이비박스 운영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⁹⁾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영아살해	12	18	12	16	7	11	16	7	8	7	8

5) 전윤정, “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페미니즘연구 제20권 제1호, 2020, 11면.

6) 2019. 4. 11.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인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에 의한 낙태죄인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하였으나 법률개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 1. 1.부터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의사에 의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7)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제 20, 21, 2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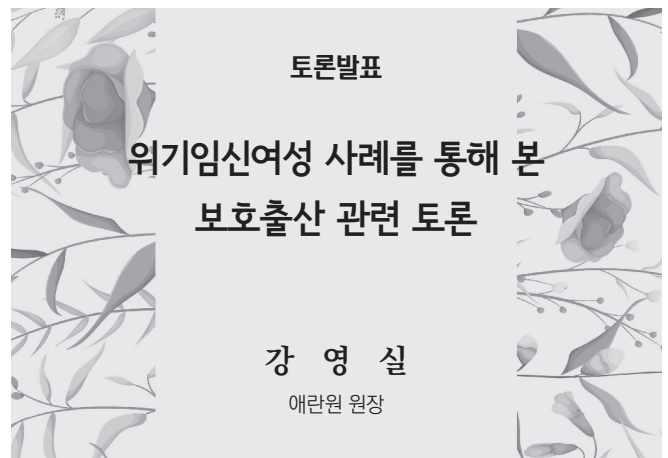
8) 신동현,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1875면.

9) 영아살해 통계의 출처: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39335> 와 <https://news.zum.com/articles/8878770>

또한 독일의 익명출산제도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독일에는 기존에 체계적인 임신상담제도를 운영한 경험과 청소년청·임신갈등상담소 등 다수의 전문기관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과 풍부한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¹⁰⁾ 즉 익명출산이 허용된 나라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보편적출생등록제도와 임신중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박스에서 아동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¹¹⁾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익명으로 아동을 유기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아동양육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 등 여성인권과 출생등록권리·부모를 알권리 등 아동의 인권이 충돌한다는 발제자의 전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권리가 충돌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권리는 동시에 조화롭게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이어야 한다.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및 부모를 알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익명출산제 도입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입법과 행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 이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

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익명출산제도 도입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임신 중단할 권리의 보장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면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여성에게 임신출산은 신체와 심리, 가족관계와 사회경제적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며 계획되지도 준비되지도 않은 임신출산에 노출된 여성들(이하 ‘위기임신여성’으로 호칭)에게는 임신출산갈등과 함께 총체적인 삶의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태아와 출생아에 대한 낙태, 유기, 살해, 매매 등의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는 연 243명¹²⁾의 아동이 유기되고 있으며 연 8명¹³⁾의 아동이 살해되고 있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임신여성의 복잡하고 다양한 초기 욕구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신출산의 문제를 국가의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산아제한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¹⁴⁾ 귀속시킴으로 임신 유지

10) 신동현,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과 비밀출산법제,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1886면.

11) 2021. 7. 19. “베이비박스 찾는 이유 다양한데...정부 제시한 ‘익명출산제 논쟁’”,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811290003145> (2022. 10. 24. 검색)

12)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중 유기 통계

13) KOSIS 영아살해 통계

14) 1961년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1963년 “뉘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66년 “세 자녀 갖기 운동”, ‘3.3.35 원칙’ -세자녀를 3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낳자.

1973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9년 ‘하나만 더 낳고 그만 두겠어요’[2]

198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1983년 “둘도 많다”/1990년 “고운 딸 하나 백 아들 안 부럽다”[3]

가 어려운 여성은 가족계획(낙태)으로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은 입양 및 시설보호로 대리양육을 하여왔다. 2000년 애란원의 '양육미혼모 중간의집'¹⁵⁾ 시범사업을 계기로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40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정부지원으로 전국에 설치되고 미혼한부모가정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한부모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 지원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여성의 입양 선택율은 낮아졌다. 이어서 아동의 원가정우선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미혼모시설 측에서의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요구를 포함하여 2012년 입양숙려 및 가정법원허가제로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 비로소 미혼모의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이 강화되고 공적영역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입양인의 성명권(姓名權)과 출생에 관련한 정보를 알 인격권에 대한 보장이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입양특례법의 개정 전·후가 동일하게 영아의 낙태, 영아 유기와 살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토론자는 그 원인을 입양특례법의 숙려상담 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영아를 출산한 사각지대 위기임신여성들의 절박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특별한 법이나 지원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I. 위기임신여성의 사례

아래는 전국 12개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긴급전화 1422-37) 중 서울 애란원에서 운영하는 1422-37 센터에서 상담·지원한 위기임신여성의 사례임

첫째. 임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

둘째. 출산은 하되, 엄마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여성

셋째. 아기 출생신고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여성

넷째. 아동을 유기하는 여성

II. 위기임신여성을 위한 법·제도 및 지원체계 구축 제안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위기임신여성의 심리정신, 사회경제적인 위기상황은 한 사례도 동일하지 않으며 특별한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예기치 못한 임신·출산 및 부모가 되어버린 상황이 심한 심리·정신적 갈등을 촉발하고 아기아빠나 부모와의 대립 및 억압, 학교나 직장으로부터의 고립, 경제적 문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자기결정이 어려운 공황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위의 모든 사례들에서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공감·지지적인 정보제공과 상담, 충분한 지원은 공황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어 상담가 및 체계화된 지원 시스템에 대한 안심과 신뢰관계의 형성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여성이 고립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자신과 아이를 위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혼인관계 중 혼외임신을 한 여성과 미등록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아기의 유기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출생등록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심한 정신장애 여성의 경우는 본의 아니게 정신의 혼미상태에서 아동 유기나 살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리하여 아동일시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정신치료와 함께 산후 건강의 회복을 요하는 여성은 단기 입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토론자는 위기임신여성과 아동의 위기상황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3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임신여성을 상담지원하기 위한 법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 둘째, 불가피한 영아 유기, 매매,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한 모든 영아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편적 아동출생제도를 마련하는 것. 셋째,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소수의 여성들이 있을 수 있겠으며 이들을 위하여 익명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2000년대 "아빠! 혼자서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이 행복합니다", "하나의 촛불보다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15) 2000년 애란원의 '양육미혼모 중간의집' 시범사업을 정부가 받아들여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전국에 43개소 개설되었고 시설 미혼모의 양육률은 70~80%이상이다.

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상황 변화 시 철회의 길도 함께 열어 놓는 것을 제안한다.

1. 위기임신여성을 상담·지원하는 법과 거점 센터의 개설을 제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에서, 독일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 중 ‘아동의 유기대응에는 가족계획,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위기임신 및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상담과 사회적 지원, 요보호 가정지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에서의 익명출산 제도는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¹⁶⁾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국가의 모성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출산과 관련된 하부 법률인 모자보건법과 한부모가족복지법¹⁷⁾에서는 임신출산갈등 및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여성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2.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우선적 도입을 제안

아동의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정책으로 출생등록 될 권리¹⁸⁾를 보장하고 미등록 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 시스템을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이로써 아동 고립, 유기, 살해, 방임, 매매 등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의 말미에서 제안한 소수에 한해 실시되어야 할 익명출산의 쏠림 현상으로 자녀를 익명으로 출산하려는 여성이 일반화된다면 원가정 양육선택을 감소시키는 제도로 오남용 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지난 3년간 애란원 1422-37 센터에서 지원한 미등록 외국인 여성이 30명이었는데 아기아빠가 한국인 입에도 불구하고 거의 찾지 못하였고 찾더라도 미등록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여성의 상황적 특성 상 아동의 출생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아동의 출생신고가 친생모의 국적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익명출생등록에 대한 고민에 앞서서 보편적아동출생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3. 극히 일부 여성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국가아동으로 등록하거나 익명출생등록을 하는 방법을 제안

위기임신여성의 대다수가 임신·출산·양육 갈등 상담과 지원을 통해 병원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모가 직접 출생등록을 하였지만 아동에게 출생정보의 공개를 보류하고 현재는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선택하는 소수의 여성에게는 익명출생신고의 길을 열어줌으로 위기임신여성의 사생활보호와 아동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단, 독일과 같이 아동이 자신의 출생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일정 연령이 되는 해 1년 전에 위기임신여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와 정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다. 상담소나 시설에서 홀연히 사라지는 여성의 아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구청을 통해 국가아동으로 등록하고 취득한 정보는 구청을 통해 지정된 공공기관에 아동의 정보가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제안한다.

III.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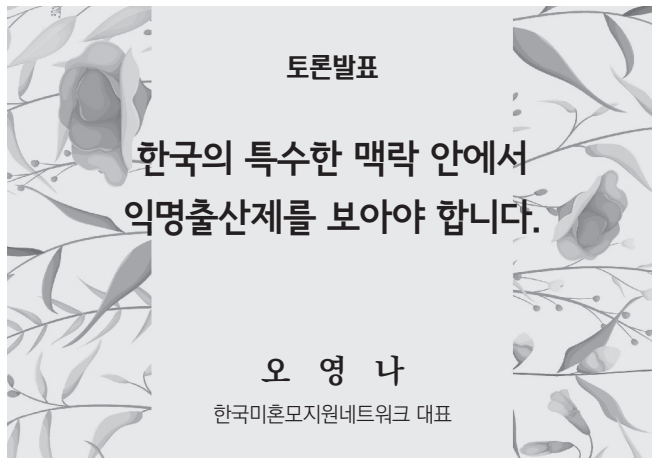
보호출산 법안이 발의되어 2년 째 논쟁 중에 있다. 여성의 사생활보호와 자기결정권, 자녀의 생명권과 출생에 대해 알 권리 등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현장에서 위기임신여

16) 강정은, 김진. “익명출산제도와 아동의 권리” 「1422-37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직원 교육 자료집」 (2021)

17) 모자보건법에서는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임신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미혼모지원시설을 통하여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하고 있다.

18)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출생 시부터의 성명권과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 37.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출생 등록 시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하게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동 위원회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 22.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성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여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법안은 친부모와 아동의 권익 보호의 목적도 있겠으나 별도로 위기임신여성의 복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도 검토·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1. 들어가며

2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역사는 익명출산의 역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것은 과거 익명출산의 피해가 여전히 미해결상태이고 입양, 임신, 출산에 대한 급격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제도 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 익명출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익명출산의 역사

한국해외입양아동수는 공식통계로는 2021년까지 통산 16만 9천 488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해외입양은 입양인과 친모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로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입양 당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단체의 신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입양 서류에는 고아라고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부모가 살아있었거나, 성인이 돼 확인한 입양 서류에 한국에서 이미 사망한 아동의 신원 및 사진이 자신의 것으로 등록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들

은 정체성과 알 권리를 박탈당한 입양인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비단 덴마크 뿐 아니라 해외입양인들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뿌리를 찾으려 해도 자신과 부모에 관한 기록과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렵고 한국 입양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만에 달하는 해외입양인의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였습니다. 미혼모들은 당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면 안된다는 사회의 편견에 부딪혀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여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아이에 대한 친모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아예 출생신고가 되지 않거나, 부모가 없는 이른바 고아호적을 만들어서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송출되었습니다.

그간의 해외입양은 아동에게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모 또한 아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입양인과 친모는 모두 피해자였고, 이제야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입양특례법, 아동보호, 임신기 상담 체계

공공기관의 개입이 거의 없이 부실하게 진행되던 해외입양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사법기관이 입양절차에 개입하게 되었고 친모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7일간의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하면서, 입양인과 친모의 권리확보라는 면에서 진일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어 유기아동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상당히 퍼져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는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 제정부터 들어 있던 내용이고, 이전의 호적법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었으며,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된 것이 아닙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은 법원에 입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규정이 생겨서 이전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입양절차를 밟거나 바로 친자로 출생신고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기록은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도 왜곡되어 알려진 것입니다.

또한 2012년 이후 유기아동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는 늘었지만 전체 유기아동수는 2012년 이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어 유기아동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유기아동을 줄이려면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익명출산제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입양특례법 개정에 반대하는 논리가 익명출산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또한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하면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지로 임신중단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성의 선택지로 익명출산을 부각하고자 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제도설계의 순서

2020년 12월에 발의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의 관행을 연상시킵니다. 입양숙려기간인 7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아동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한 것, 부모없는 아동으로 출생신고,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신부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과거의 관행들이 발생시킨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이제야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입양특례법의 추가적 개정을 통하여 입양절차에서 자본의 논리를 배제하고 입양절차를 공적인 아동보호절차로 일원화되어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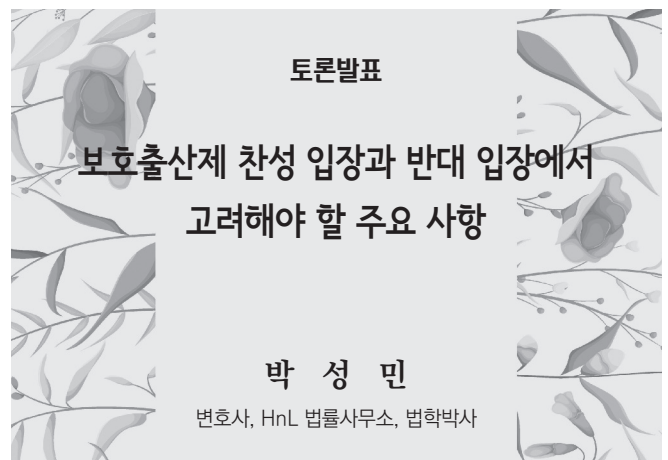
또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신기 상담과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5. 맺으며

과거 해외입양이 익명출산으로 진행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잃은 입양인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익명출산제 도입은 반대를 불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혼모들은 자녀를 포기하라는 압력과 편견에 맞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익명출산제에 미혼모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입양절차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임신기상담과 보호체계가 선행되어 원가정보보호의 원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원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고 이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부족했고 이제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1. 보호출산제 도입의 의미와 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보호출산제 도입에 관한 관점은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생모가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직접 맡기며 익명을 보호받길 원할 때 익명 보호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관점이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아래 표의 왼쪽에 서서 보는 관점과 아래 표의 오른쪽에 서서 보는 관점이다. 전자의 관점은 대체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고 후자는 반대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제도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생모가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기려면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 함. 생모가 익명을 보호받으면서 아기를 직접 국가의 보호에 맡기길 진정으로 원해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생모에게 허용된 선택지는, ① 실명을 밝히는 출생신고 후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기거나 ② 익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아기를 베이비박스¹⁹⁾ 등 안전한 곳에 놓아두어서 기아로 발견되어 신고되도록 하거나 ③ 익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아기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곳에 유기하거나 ④ 태아를 죽이는 것 외에는 없음. 익명을 보호받으면서 아기를 직접 국가의 보호에 맡길 생모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생모가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길 때 상담기관을 통해 직접 양육 지원, 보호출산, 입양 절차 등을 상담 받고, 생모가 원하면, 익명을 보호받으면서 아기를 직접 국가의 보호에 맡기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함 =>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생모에게 허용하는 선택지에 좌향의 ① 내지 ④에 더하여, ⑤ 보호출산('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이 추가됨. 보호출산 시 상담기관이 생모 등 정보가 기재된 출생증서를 작성하여 밀봉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관하므로, 좌향의 ①보다는 자녀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좌향의 ② 내지 ④보다는 자녀의 알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

왼편				오른편	
태아를 죽임 ²⁰⁾	아기살해 ²¹⁾	아기를 위험한 곳에 유기	생모가 익명을 보호받으면서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김	생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김	생모가 아기를 직접 양육
“태아를 죽이거나 아기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곳에 유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한 생모가 익명을 보호받고 싶다면 이를 허용하여,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출산제 or 베이비박스 보호출산제 or 베이비박스	“직접 양육해야 마땅한 생모가 양육을 포기한다면 적어도 실명의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생모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생모의 직접 양육 가능성을 높이고 아기가 자란 후 생모를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보호출산제는 양육을 포기한 생모가 존재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고아원이 있어서 양육 포기가 조장된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고아원을 없애자고 할 것인가?’). 자녀의 알 권리보다 생명 보호가 더 중요하다. 태아는 살고 싶어 하고 태아와 유전적, 신체적,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아기도 마찬가지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을 보호받으면서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어주므로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 보호출산제가 없었다면 죽었을 아기가 보호출산제로 인해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보호출산제로 인하여 자녀의 알 권리가 침해될 뿐이다.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생모를 알 권리를 박탈당한 아기는 태아 시기에 낙태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4008 판결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난 것이 영아 유기의 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 이유를 보면, “위 공동체가 운영하는 위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던 사실, 이에 피고인도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라고 하여 영아 유기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1) 양육 포기와 형법상 유기는 다른 개념이다.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115면에서는 형법상 유기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둬으로써 생명, 신체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생모가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생모의 아기 양육 포기는 병리(病理) 현상이고 악(惡)이다. 하지만 생모가 태아를 죽이거나 아기를 살해하거나 아기를 위험한 곳에 유기하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었음에도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였다는 입장에서 보면 생모의 아기 양육 포기를 단순히 병리 현상이나 악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는 생모가 아기 양육을 포기한 것은 안타깝지만 생모가 아기의 생명을 지킨 것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격려와 지원을 할 수 있다.

2. 보호출산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이슈들

보호출산제는 생모가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상황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생모가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상황은 다양하나²²⁾ 슬프고 아픈 현실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논자들마다 염두에 두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강조하는 가치가 다르더라도 논의의 방향은 슬프고 아픈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슈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가. 일반적으로 원가정 보호 및 가정 보호 우선 원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나. 미혼한가정 지원 등 원가정 지원 정책과 보호출산제는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며 운영하기에 따라 상호 보완적이다.

프랑스, 독일, 미국에는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미혼한가정 지원 등 원가정 지원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미혼한가정이 아기를 직접 양육하기 더 좋은 문화와 정책적 지원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생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신뢰출산제 시행 후 제도를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신뢰출산제는 임신 갈등에 있는 여성들에게 국가의 지원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제도이며 다른 기존의 제도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다.²³⁾ 보호출산제는 운영하기에 따라 원가정 지원 정책과 상호 보완적이다.

원가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은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 법안들은 모두 원가정 보호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보호출산제가 원가정 지원과 반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22) 현소혜 등,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17, 39면 이하에서는 양육 포기 아동 1,177명 중 양육 포기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895명을 분석하여, (1) 양육곤란(801건, 89.5%), (2) 입양곤란(289건, 32.3%), (3) 기타 항목(118건, 13.2%)으로 대분류한 다음, (1) 양육곤란 사유는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심리적 어려움, ③ 단독양육의 어려움, ④ 비적출자(생모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 출산, ⑤ 장애아 출산, ⑥ 양육자의 부재, ⑦ 미혼부에 의한 양육, ⑧ 양육 거부, ⑨ 출생신고 곤란 항목으로 분류하고, (2) 입양곤란 사유는 ① 출생신고 기피로 인한 입양곤란, ② 비적출자 출산으로 인한 입양곤란, ③ 미성년자 미혼모의 입양곤란, ④ 부모 동의 요건 불비로 인한 입양곤란, ⑤ 숙려기간 요건으로 인한 입양곤란, ⑥ 장애·질병으로 인한 입양곤란, ⑦ 미혼부의 입양곤란, ⑧ 입양허가, ⑨ 확인불가로 분류하고, (3) 기타 항목으로 ① 성폭력 등으로 인한 유기, ② 위기상황으로 인한 유기, ③ 국제적 요소로 인한 유기, ④ 기타로 분류하였다.

23) 현소혜 등,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17, 39면 이하에서는 양육 포기 아동 1,177명 중 양육 포기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895명을 분석하여, (1) 양육곤란(801건, 89.5%), (2) 입양곤란(289건, 32.3%), (3) 기타 항목(118건, 13.2%)으로 대분류한 다음, (1) 양육곤란 사유는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심리적 어려움, ③ 단독양육의 어려움, ④ 비적출자(생모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 출산, ⑤ 장애아 출산, ⑥ 양육자의 부재, ⑦ 미혼부에 의한 양육, ⑧ 양육 거부, ⑨ 출생신고 곤란 항목으로 분류하고, (2) 입양곤란 사유는 ① 출생신고 기피로 인한 입양곤란, ② 비적출자 출산으로 인한 입양곤란, ③ 미성년자 미혼모의 입양곤란, ④ 부모 동의 요건 불비로 인한 입양곤란, ⑤ 숙려기간 요건으로 인한 입양곤란, ⑥ 장애·질병으로 인한 입양곤란, ⑦ 미혼부의 입양곤란, ⑧ 입양허가, ⑨ 확인불가로 분류하고, (3) 기타 항목으로 ① 성폭력 등으로 인한 유기, ② 위기상황으로 인한 유기, ③ 국제적 요소로 인한 유기, ④ 기타로 분류하였다.

서 그런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논의를 혼탁하게 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다. 보호출산제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가 담당하게 된 역할을 대체하므로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운영되면 베이비박스의 역할과 필요성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후 베이비박스 아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베이비박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생모가 익명을 보호받으면서도 아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서 국가의 보호에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또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해주고 나아가 정부에서 경비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숫자의 합법적인 베이비박스가 양산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²⁴⁾ 납득하기 어렵다. 보호출산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가 하고 있는 역할을 국가에서 담당하는 제도인 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 법안 중에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위 글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프랑스에는 생모의 익명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가 있어서 베이비박스가 없는 점, 독일의 ‘보호출산제’(신뢰출산제) 도입 후 제도를 시행하고 평가한 보고서(2017)에서 ‘보호출산제’(신뢰출산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익명출산이 되었을 사례들을 ‘보호출산’(신뢰출산)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보호출산제’(신뢰출산제)의 목적이었던 모자의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²⁵⁾ 독일의 익명출산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박스에 상응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출산제 하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없었다면 베이비박스를 찾았을 생모들이 베이비박스 대신 보호출산제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보호출산제가 현재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하게 될 것이다.

3. 보호출산제 찬성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가. 원가정 보호 및 가정 보호 우선 원칙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가정 보호 및 가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출산제는 생모가 보호출산을 고민할 때 실효성이 있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면 생모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1) 생모가 가급적 보호출산보다는 직접 양육을 선택하고,
- 2) 예외적으로 생모가 진정으로 보호출산을 하겠다고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출산을 하되,
- 3) 생모가 진정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생부가 진정으로 양육을 원할 경우 생부가 양육할 수 있고,
- 4) 생모가 보호출산을 하고 생부가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 가급적 일찍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으며,
- 5) 입양되지 못하는 아동이 가정위탁, 그룹홈 등 가능한 가정 양육에 가까운 양육을 받고 보육원 등 가정이 아닌 환경에서 양육되더라도 가정에서 자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얻을 수 있어야 함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지 여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불분명하다. 양육 포기가 조장된다는 주장은 생모가 보다 용이하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게 해주면 양육 포기가 조장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일부 실증 자료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호출산이 아기 양육 포기를 조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생모가 양육을 포기했을 때 국가에서 아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양육 포기가 용이하게 되므로 국가에서 아기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고아원이 있어서 양육 포기가 용이하게 되므로 고아

24) 소라미, 미혼모, 부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2021, 69면.

25) 서종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법과 사회, 2022. 6., 105면.

원도 없애야 하고, 입양 가정이 있어서 양육 포기가 용이하게 되므로 입양 가정도 없애야 할 것이어서, 보호출산제 반대 주장의 근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는 입장에서는 낮은 가능성이 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시 그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불분명하지만,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로 인한 아기 양육 포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대한민국이 아기 양육 포기를 고민하는 생모들이 드라마 파친코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내가 키울 겁니다.”라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보호출산 지원가정 지원, 아기 양육의 기쁨과 보람, 양육을 포기했을 때 겪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실효성 있게 상담해야 하고 생모가 충분히 숙고한 후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아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호출산제의 진정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아를 죽일 수도 있고 아기를 살해할 수도 있고 아기를 위험한 곳에 유기할 수도 있고 보호출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던 생모가 아기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나. 자녀의 알 권리

- 1) 보호출산제로 인하여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거나 오히려 보호되는 경우

보호출산제가 아니었다면 생존할 수 없었는데 보호출산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호받게 된 자녀의 경우 보호출산으로 인하여 알 권리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2) 보호출산제로 인하여 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없었다면 생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국가의 보호에 맡겼을 자녀의 경우 보호출산으로

로 인하여 알 권리가 제한된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없었다면 생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국가의 보호에 맡겼을 자녀의 경우 보호출산으로 인하여 알 권리가 제한되고, 그 중에는 그 알 권리의 제한이 큰 고통인 자녀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보호출산제의 핵심이 생모의 익명 보호에 있으므로 자녀의 알 권리와 완벽한 조화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가능한 한(as far as possible)” 자녀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 법안에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출생증서 열람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녀가 진정으로 생모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 생모가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이나 문화 조성 등 보호출산제 하에서도 자녀의 알 권리를 “가능한 한(as far as possible)”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가. 태아와 아기의 생명 보호 방안

아기 양육을 포기하는 생모가 존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프랑스, 미국, 독일과 같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아기 양육을 선택하기에 더 좋은 나라에서도 아기 양육을 포기하는 생모가 존재한다. 아기 양육을 포기하는 생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기 양육을 포기하면서도 자신의 익명을 보호받기로 결정한 생모가 없다고 눈을 감는 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보호출산제가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 아기 양육을 포기한 생모에게 허용된 선택지는, ① 실명을 밝히는 출생신고

후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기거나 ② 익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아기를 베이비박스 등 안전한 곳에 놓아두어서 기아로 발견되어 신고되도록 하거나 ③ 익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아기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곳에 유기하거나 ④ 태아를 죽이는 것 외에는 없다. 이 중 익명을 보호받기로 결정한 생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②, ③, ④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익명을 보호받기로 한 생모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② 베이비박스 외에는 없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② 베이비박스 대신에 그 대안으로서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제 외에는 없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태아와 아기의 생명 보호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입장(‘불행한 일이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나.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의 예외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 원가정 보호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사후적 고찰이지만 차라리 보호출산을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원가정도 존재한다. 아픈 현실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일 수만은 없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서 최선이라는 단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래서 최선이라는 단어는 해당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혹은 진정한 이익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²⁶⁾

만약 생모가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고 숙고하여 진정

으로 아기 양육을 포기한다면 그 경우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을 들어 원가정 보호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행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생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직접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기 양육을 포기한 경우 원가정 보호가 반드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보호출산제는 여기에 생모의 익명을 보호하는 것을 더하는 것이다. 생모가 진정한 의사로 보호출산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다. 여성의 자유와 인권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경우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생모는 태아를 죽이거나 아기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곳에 유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한 생모이다. 그런 생모가 익명을 보호받고 싶어하는데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그 생모에게 그럴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실명의 출생신고 또는 직접 양육을 강요한다. 이것은 생모로 하여금 태아를 죽이거나 아기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곳에 유기하거나 또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까지 가서 아기를 놓는 선택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시에 자신의 익명을 보호받고 싶은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서 덧붙여 생각해볼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 문제이다. 보호출산제 논의에서 생모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하게 되고 생부는 아기를 양육하려는 미혼부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생모와 생부가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대부분 생부는 익명이 보장된다.²⁷⁾ 생부는 아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달라서 법적으로도 달리 취급될 수 있다. 하지만 남성에

26)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2008.

27)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는 익명을 보호하면서, 태아를 죽이지 않고 아기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곳에 유기하지도 않고 태아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킨 여성에게는 익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보호출산제 반대는 생부의 익명은 보호하지만 생모의 익명은 보호하지 않는 남녀 차별 상황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일 수 있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 베이비박스가 없어져야 할 필요성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 1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익명을 보호받으면서 국가에 아기의 보호를 맡기려는 생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찾는 것에 물리력을 써서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난 것이 영아 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 이유를 보면, “위 공동체가 운영하는 위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던 사실, 이에 피고인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라고 하여 영아 유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²⁸⁾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호출산제(‘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위 최종견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보호출산제 논의에서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대부분 현행 제도 하에서의 베이비박스를 찬성한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는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베이비박스의 축소를 의미하고 보호출산제가 입법 의도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면 베이비박스를 찾는 생모가 없어져서 베이비박스도 없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서 보호출산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결국 현재 베이비박스가 담당하게 된 역할을 계속 베이비박스에서 수행하도록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주사랑공동체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여 베이비박스가 소멸되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베이박스가 지금까지 계속 역할을 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현행 제도에서 베이비박스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국가와 법이 수행할 수 있을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 시 익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생모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생모와 태아, 아기의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발생한다. 그래서 서구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호출산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다.²⁹⁾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출산제 없이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4008 판결

29) 현소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32권 제2호, 2018, 54면에서는 프랑스식 익명출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들, 독일식의 신뢰출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들과 관련 입법 개정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별기획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3)

가정폭력과 알코올

우리사회에서는 술을 마시고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을 사용하고도 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런 음주문화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술로 인한 실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술로 인해 발생한 실수나 폭력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술은 이성적인 면을 마비시키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강하게 하는 물질이므로 술을 마신 후 폭력을 행사하기 쉽습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을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는 음주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풍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술은 가정폭력을 사용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 가해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심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술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가정폭력과 술을 마시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동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 술은 인지능력을 저하시킵니다.

- 술은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해자는 인지능력이 감소되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술은 공격성을 증가시킵니다.

- 술을 마시면 공격성과 관련된 뇌의 구조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가정폭력을 사용할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알코올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 술 문제와 가정폭력은 세대를 통해 전수됩니다.

- 가정폭력과 술 문제는 가정 내에서 관찰과 학습을 거쳐 세대를 이어 전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은 자녀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가 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본격화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 (1)

1999년	상담소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발족
2000년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호주제 폐지 입법 청원
11월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제기

민법 제정 당시부터 불합리한 가족법의 개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온 상담소는 그 결과 1962년과 1977년, 1990년 크게 세 차례 개정을 이루어 냈으로써 가족법상 양성평등, 부부평등을 상당 부분 이끌어내는 결실을 거두었으나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의 가장 커다란 장벽인 호주제 폐지를 과제로 남겨두고 있었다. 이에 2000년대에 접어들어 상담소는 다시 본격적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상담소는 먼저 1999년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7월 여성주간을 맞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공동협력 사업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자료집을 발간했다. 2000년에 들어서는 <가정상담>지를 통해 호주제 폐지 캠페인 ‘호주제 폐지를 향하여’를 그리고 8월부터는 여성 신문에 ‘호주제여, 지구를 떠나거라’ 연재를 시작했다.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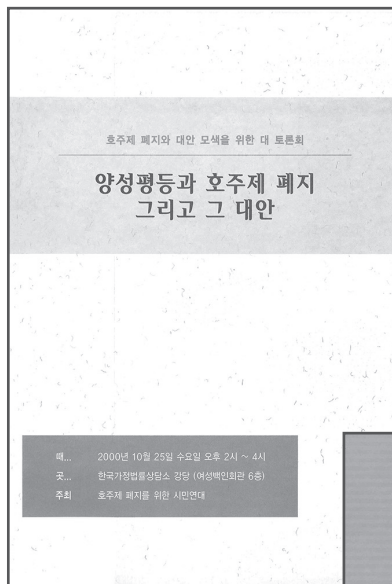


은 해 9월에는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호주제 폐지를위한시민연대’를 발족했는데, 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이 간사단체를 맡아 호주제 폐지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시민연대는 출범과 함께 국회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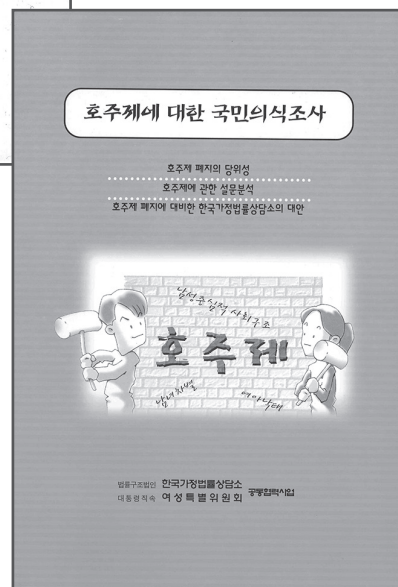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청원을 냈다. 상담소 광배희 소장이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상임대표와 청원인 대표를 맡았다. 이어 10월에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주최로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편집부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의
호주제 폐지와 대안 모색을 위한 대 토론회
자료집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린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서명하는 시민들 ▲



부부 사이의 폭력은 물론 형제, 남매 등
가족 구성원 사이 폭력도 많아
갈등이 빚어졌을 때 우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2020버1*** 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피해자(아내) 전화 연락 및 문자메시지 발송 2회,
보호관찰소 담당 계장과 전화 통화 1회 등 9회

상담기간

2020. 12. 8. ~ 2021. 6. 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37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사이에 1남 1녀(37세, 35세)가 있다. 딸은 결혼하였으며 아들은 취업준비 중이다. 부부는 함께 장사를 하였으나 현재는 피해자만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행위자는 초등학교 청소일을 하며 용돈도 벌고 건강 관리를 한다. 행위자는 2020년 1월 사건당일 술에 만취한 채로 귀가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함치며 주먹과 발로 방문을 수회 가격하고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정폭력을 하여 6개월간 보호관찰과 6개월간 본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갈등요인으로 피해자가 혼자 사는 10여 명의 친구와 매일 어울리며 새벽까지 놀다 귀가하고 남편인 자신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며 잔소리가 심해진 것을 꼽았다. 또한 4년 전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 이후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서

부부의 각방 별거도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자신과 피해자 모두 먼저 한방에서 지내자고 제안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칠순여행 때나 아들이 결혼한 이후 피해자와 한방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행위자는 보호처분을 이행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피해자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해하고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건강을 돌보았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을 줄였고 담배는 3일에 한갑 정도로 줄였으며, 가사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여전히 부부가 각방을 쓰고 피해자는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한다고 하면서 부부관계 만족도를 사건 당시나 현재 모두 0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반성하고 마음을 비우고 다스린 결과, 마음이 편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절주노력을 계속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2*** 특수폭행 / 2022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누나) 개별상담 7회,
교육강좌 3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행위자(동생)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2회(앱 사용, 비대면 진행),
어머니 전화상담 1회, 아버지 및 어머니 상담 1회 등 22회

상담기간

2020. 12. 3. ~ 2021. 6. 6.

상담경과

행위자 두 사람은 누나와 동생 관계이다. 누나는 부모가 둘째인 자신을 사건외 언니 및 본건 행위자인 동생과 차별하였다는 불만을 가지고 부모와 냉담하게 지내며 자신이 사온 음식을 자기 것이라고 표기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여 왔다. 2020년 4월 사건당일 누나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본 동생이 누나가 사온 재료가 아니라고 시비하다가 누나를 밀치고 폭력을 하자 누나는 부엌칼을 꺼내 들었고 다시 동생이 폭력을 하여 두 사람 모두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되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한집에서 지내면서도 대면하지 않고 지냈다. 누나는 근무시간이 밤인 경우가 많고 생활 사이클이 서로 달라 대면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부모와도 같이 밥을 먹지 않고 지냈다.

부모를 상담한 결과, 자녀 세 명을 차별한다는 생각이나 의도가 없었는데 딸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관점의 전환과 딸의 언행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특히 칭찬할 일은 아낌없이 칭찬하도록 조언하였다. 자녀들이 성장하였으므로 독립하여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단기 내에 독립이나 결혼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다. 부모 모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딸과 아들 모두와 대화하고 밥을 같이 먹는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다.

본건 당사자인 누나와 동생은 서로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었으며 간섭하지 않고 지내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여, 두 사람이 충돌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여야 할 상황으로 고려되었다. 상담기간 중 상호간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다. 동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사건 직후 10점 만점에 2~3점이었다면 종결시점에는 5~6점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것을 다짐하였다. 누나는 부모 및 동생에 대한 마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이나 자신 스

스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가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내지 역할 등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2***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집단상담 5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교육강좌 3회(앱 사용, 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6회

상담기간

2020. 12. 4. ~ 2021. 6. 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남(3세)이 있다. 행위자는 초혼이고, 피해자는 재혼이다. 행위자는 결혼 전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경험 있으며 결혼 후에는 본 건 폭력이 처음이었다. 행위자는 2020년 7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장염에 걸린 아들에게 약을 먹이는 문제로 다툰 후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는데 화가 나서 옷장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 피해자의 옷 수벌을 꺼내어 가위로 찢어 손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행위자는 본 건 재물손괴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자신과 피해자 모두 감정조절을 잘하지 못하여 본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상담에 대한 바람으로 감정조절 잘하기를 꼽았다. 이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신호 알아채기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행위자는 언어폭력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으며 폭력대화법을 반성하고 비폭력대화법을 이해,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관점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행위자가 과거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으면 본가에서 자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 피해자가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밖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서 마시며 음주횟수도 줄이는 등 음주습관을 변화하여 피해자와 다툼 일이 줄었다고 보고하였고 계속 노력을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조절을 잘하고 전에 비하여 애정표현도 잘한다고 변화를 인정하였으며,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10점이라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금처럼만 지내면 좋겠다고 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화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화를 가라 앉히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전에 비하여 친구들과 모임 횟수를 줄였고 집에 있을 때는 아이와 잘 놀아서 피해자가 불만이 없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향후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는데 상담을 통해 배운 바를 활용하여 감정을 조절하면 폭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하였다.

2020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4회(앱 사용, 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2회

상담기간

2020. 12. 28. ~ 2021. 6. 16.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10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0년 7월 사건당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게임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에게 침이 튼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용역일을 하다가 2021년 1월에 택배회사에 취업하였다. 새 직장에서의 적응을 고려하여 상담일정을 조정,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하며 다문화센터에 매일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행위자는 평소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폭력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언어폭력은 물론 아무리 경미 하더라도 신체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대화법 교육을 통하여 비폭력대화법을 인식하고 실천하였다. 행위자는 어머니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과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관찰되어 이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노력도 당부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사건 당시나 현재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점이고, 2점의 공백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반면, 행위자는 베트남어 습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기에 행위자에게도 베트남어를 배우며 피해자와 언어적, 문화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으며, 잔소리,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줄었다고 보고하고, 사건 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3점, 현재는 6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에게 더 바라는 점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기, 아이에게 베트남 엄마 닮아서 기분나쁘다고 말하지 않기, 아이 돌보는 것을 엄마의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기 등을 꼽았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바람을 듣고 의식의 한계 등으로 미처 생각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개선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이 혼 12

●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Q 문 48 |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저를 무시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제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조차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녀들도 있는데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 남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조), 귀하는 아내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

결)는 판례에 비추어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Q 문 49 |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가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차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액이 전혀 없어 물었더니 교회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교리상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귀하의 아내는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을 위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귀하와 의논 없이 부부공동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Q 문 50 |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여 믿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성추행범으

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정신병이라고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Q 문 51 |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결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괴롭히는 바람에 우울증이 발병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정신병이라며 어차피 시부모도 모시지 못할 바에야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 귀하의 경우 그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잠시 정신질환에 걸렸더라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불치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Q 문 52 | 남편이 결혼한 다음 해에 정신병으로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에 병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게 남은 것은 많은 빚뿐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지인이 추천한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미숙한 까닭에 임대료 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일용근로를 전전하며 힘겹게 생활하던 중 방문판매사업인 이른바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 초기에는 꽤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제가 속한 다단계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하면서 저는 또다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을 치었고 손해배상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못을 뉘우치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녔지만 신용불량자라는 신분 때문에 통장을 이용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50만원의 수급비에 의존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제가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그리고 채무자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

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동법 제564조 제1항). 그리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현재 귀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약 50만 원의 소득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중위소득 60% 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입니다. 청산할 재산이 없다는 점과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채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56조에 의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면책불허가사유만 없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변제책임이 면제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전규선 상담위원

코다

감독 셀 헤이더

출연 에밀리아 존스, 트로이 코처, 대니얼 듀런트, 말리 매들린, 에우헤니오 데르베스



고등학생 루비(에밀리아 존스 분)는 코다(CODA, Child of Deaf Adult), 청각장애 부모에게서 태어난 장애 없는 아이다. 부모님과 오빠까지 모두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루비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어부인 아빠 프랭크(트로이 코처 분)와 오빠 레오(대니얼 듀런트 분)를 따라 배에 함께 올라타 무전에도 답하고 다른 어부들이나 감독관의 말을 전달하느라, 정작 학교에 가면 피로에 지쳐 즐기 일쑤다. 하지만 짝사랑하던 마일스(퍼디아 월시-필로 분)를 따라 영접결에 가입한 합창부에서, 루비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시작한다. 음악 교사 베르나르도(에우헤니오 데르베스 분)의 권유로 버클리 음대 오디션을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한 루비는, 곧 자신이 빠진 삶을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는 가족들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각색상, 남우조연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운 감동에 빠뜨린 영화 <코다>는 여러모로 1996년 독일 영화 <비온드 사일런스>를 연상시킨다.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장애 없는 아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고요한 세계와 정반대 영역에 속한 음악에 끌린다. 부모는 처음엔 이런 움직임이 자신들을 향한 십 대 소녀의 치기 어린 반항이나 배신 같은 것이라 가볍게 여기지만, 실은 자식들이 전혀 다른 세계로 떠나는 첫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차차 깨닫게 된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성은 가슴 아픈 파국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와 절대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존재가 별개의 개체였음을, 다른 욕망과 꿈이 있음을 인정하며 결국엔 각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화해와 이해, 배려가 이어진다.

이 영화에서는 청각장애라는 변별점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루비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그렇게까지 유별난 것은 아니다. 감독 셀 헤이더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대화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단절이나 부모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10대 시절을 겪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모님과 세상은 나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는, 아직은 자신이



살아온 만큼의 짧고 좁은 영역에서만 삶을 파악하는 어린 자녀의 마음, 그리고 내가 꾸려왔고 부양했던 가족이 점점 흩어지고 분리되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충돌하는 보편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루비는 처음 합창부를 찾아갔을 때에는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하지 못하고 뛰쳐나온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함께 다니며 수어 통역을 하던 자신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고 또래들은 별종 취급하며 따돌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다른 가족들처럼 ‘못생긴’ 소리를 내다가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열망을 실현 시킬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악 교사 베르나르도가 “할 말이 없는 예쁜 목소리는 차고 넘쳐. 너는 어때, 너는 할 말이 있니?”라고 물었을 때 루비는 주저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중에 루비는 선생으로부터 다시 한번, 노래할 때 기분이 어떤지를 설명해보라는 요구를 받는다.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다가, 루비는 자신에게 또 다른 언어의 도구인 ‘손’을 통해서 감정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 넘치다가 노래를 통해 비

로소 바깥으로 발산되고, 그것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섞여 들며 사라지는 듯한 과정이 손짓으로 전달되고, 그러면서 짓는 행복에 겨운 표정이 루비의 뜨거운 감정을 웅변한다. <빌리 엘리어트> 같은 영화에서, “춤출 때 기분이 어떠니?”라는 면접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린 빌리는 춤을 출 때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몸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었다. 이 비범한 아이의, 그리고 춤이라는 예술의 본질을 건드리는 소박하면서도 진실된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코다>에서도 맞닥뜨리게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갓 발견한 소년소녀의 순진한 환희가, 가족과 학교라는 익숙한 영역에서만 머무르다가 처음으로 신세계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질서 안에 막 발을 디디며 어른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들어선 아이의 설렘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지 않기란 어렵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2021.11-2022.11

책

인생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
당신이 살았던 날들
에릭 번의 감정 수업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심리학
가족의 역사-틀-전환-확장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
젠더판례백선
젠더와 법
우리는 왜 젠더를 이해해야 할까?

남자다움의 사회학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4권1집(2022)

상속세 증여세
국제 이혼소송 절차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친족·상속법

논점민법강의

신민사소송법

가압류·가처분 실무

경매 신청 절차 이론 및 실무

가사소송실무 I, II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개인파산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

이혼의 기술

2021 김유정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 제67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2022 제14회 현진건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 제4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2022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

작별인사

하얼빈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X)

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2021 한국의 성인지 통계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헌법재판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성별정체성과 성별정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일람집:1998-2020

사랑으로 희망으로 III

동지교실 VI 행복한 삶을 위한 비폭력 대화

보호출산제 도입-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

2021년도 상담통계

허유선 | 더퀘스트 | 2022

멜핀오르빌리르 | 북하우스 | 2022

김정현 | 유노북스 | 2022

정대연 | 학지사 | 2022

국립여성사전시관 | 국립여성사전시관 | 2022

레이철 루이즈 스나이더 | 시공사 | 2021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 사법발전재단 | 2021

사단법인 올 | 박영사 | 2022

안느샤를로트위송 외 | 청아출판사 | 2021

필 바커 | 소소의책 | 2020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2022

신재열 외 | 조세통람 | 2022

법률연구회 | 법률연구회 | 2021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2021

김주수, 김상용 | 법문사 | 2022

송영곤 | 헤르메스 | 2022

이시윤 | 박영사 | 2021

김덕원 | 진원사 | 2022

김동근, 김요한 | 대원 | 2022

박동섭 | 법률문화원 | 2022

김동근, 최나리 | 법률출판사 | 2022

이이수 | 정독 | 2021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박영사 | 2022

우병창 외 | 유원북스 | 2022

정지영 외 | 강 | 2021

김멜라 외 | 생각정거장 | 2022

정소현 외 | 현대문학 | 2021

이근자 외 | 화니콤 | 2022

손보미 외 | 문학사상 | 2022

편혜영 외 | 문학동네 | 2022

김영하 | 북복서가 | 2022

김훈 | 문학동네 | 2022

박선영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1

주재선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1

송치선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2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2022

강서영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22

소은영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22 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2 등 총 466권

상담소 자료집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일람집:1998-2020

사랑으로 희망으로 III

동지교실 VI 행복한 삶을 위한 비폭력 대화

보호출산제 도입-자녀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친생모의 익명성 여부 논의

2021년도 상담통계

* 출처별 : 세종 기증도서 110권, 리디 기증도서 93권, 여성정책연구원 23권, 헌법재판연구원 22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8권 및 상담소 자료 12권 등 포함

* 자료분야별 : 사회과학 126권, 법학 78권, 문학 56권 등 포함

김유진 사서



본소,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본소는 11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상담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업무협약은 상담업무에 필요한 지원과 사법접근센터 운영에 대한 상호교류, 상담위원 대상 교육, 협력사항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사진 2면)

본소, 비전트레이닝센터와 노숙인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본소는 11월 7일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센터장 한명섭)와 노숙인 신용회복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교육·홍보·법률구조지원 등 사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가정폭력 연구하는 일본학자단 본소 방문

11월 14일 일본, 미야조노 히사에 동양대학교 교수, 야마모토 치아키 페리여학원대학 교수, 마츠무라우타로 관서북지과학대학 교수는 송현중 서울가정법원 조사사무관의

안내 및 통역으로 본소를 방문하였다.

방문 학자들은 본소 광배희 소장과 인사를 나눈 후, 8층 강의실에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과 차연실 상담위원을 만나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정책 등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본소 가정폭력가해자 프로그램의 개요 및 운영상황을 비롯하여 가정보호사건에서 본소를 비롯한 민간지원기관의 위상, 쉼터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가해자 프로그램 연계 여부, 지역 쉼터에의 피해자 연계, 가정폭력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성가족부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것이었다.

방문 학자들은 일본은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상담 등 성행교정 처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가정폭력피해자를 쉼터에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일본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과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향후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하였다. (관련사진 2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11월 3일과 24일 2회에 걸쳐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1월 3일 강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마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느낌과 감정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강의하였다. 강사는 부부

갈등에 감정과 느낌, 마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24일 강의는 '부부대화법'을 주제로 강사는 서로 성별도, 배경도, 가치관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을 때 관계를 바람직하게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여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 강의는 내년 2월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용덕 변호사(전 대법관)

작년에 이어 본소에 운영후원금 기부

김용덕 변호사(전 대법관)는 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의 운

영후원금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백만 원을 기부하였다.

법률구조에 대한 변호사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

2022년 11월 상담통계

총 건수 5,672				
법률상담 (4,62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982	3,541	96	2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894	55	100		

• 인터넷 정보 이용 58,001 건

2022년 11월 한 달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672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62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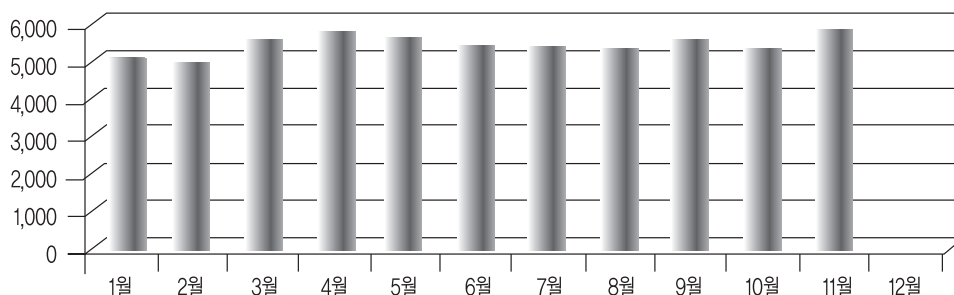
(81.5%), 화해조정 894건(15.8%), 소장 등 서류작성 55건(1.0%), 소송구조 100건(1.8%)이었다.

법률상담 4,62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10월에 비해 가사사건은 남녀관계(0.3%→0.4%), 부부갈등(3.5%→5.7%), 이혼(18.7%→19.2%), 면접교섭권(1.8%→2.0%), 인지(1.8%→2.0%), 친생자존부(1.5%→1.6%), 파혼(0.3%→0.4%), 혼인무효·취소(0.5%→0.6%), 유언·상속(6.7%→7.2%), 개명(1.2%→1.4%), 성변경(0.8%→1.3%), 파양(0.2%→

0.4%), 성년후견(3.5%→4.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민사사건은 부동산(0.2%→0.3%), 민사기타(0.6%→0.9%), 형사사건은 성폭력(0.0%→0.1%), 형사기타(0.6%→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62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82건(21.2%), 전화상담 3,541건(76.6%), 인터넷상담 96건(2.1%), 순회상담 2건(0.0%), 지상상담 2건(0.0%)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영덕,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방선영, 이승주, 장철진, 천정환 변호사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주신

오영미 변호사님

• 학생 자원봉사

강정하, 권수민, 김가연, 김나연, 김다솔, 김상은, 김석주, 김선옥,
김성현, 김세연, 김승현, 김연주, 김 원, 김이훈, 김지민, 김지오,
김진호, 김채연, 김태은, 김하은, 도희원, 문송지, 민정원, 민지용,
박세현, 박수민, 박인아, 박재우, 박태희, 배호진, 백정은, 성은별,
신동은, 왕도경, 원지수, 이세진, 이예원1, 이예원2, 이은세, 이종원,
이진우, 임가현, 장이현, 전재식, 정재원, 정희재, 조유진, 조윤정,
채다운, 천소영, 최건희, 최신양, 최유진, 최준영, 하승연, 하유지,
한경희, 허경호, 허인서, 허정수, 홍윤아, 황세윤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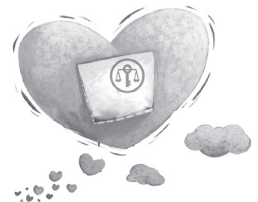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최문원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정순, 조성혜, 신연희, 이서원,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
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
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
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11.2.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11.16.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전규선 상담위원

11.18. 동작구가족센터-종사자대상 법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11.21. 소나무센터 유관기관 법률구조연계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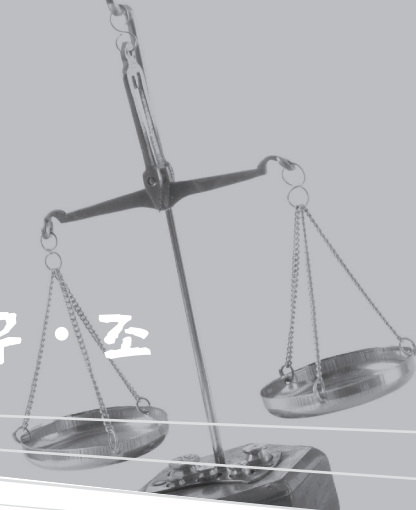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 수업을 진행하였다. 16일 서울남부지방
법원과의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다. 22일 여성정책연
구원 주최 최종연구보고심사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하
였고,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 회의실에서 진
행된 법무부 주관 “법률구조서비스 대상범위 조정 TF
구성 및 플랫폼 구축 실무협의”에 참석하였다. 28일 서
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국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
원 공동주관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8일, 22일, 24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 및 친권자 및 양육자 변
경 사건 등을 조정하였다. 14일에는 차연실 상담위원
과 함께 본소를 방문한 일본학자들을 맞이하여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등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정책
등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25일에는 국립여성사전시
관의 여성사 아카데미 3강으로 ‘가족법의 탄생과 개정
운동’에 대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를 하였다.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30여 년 동안 아내에게 폭력, 폭언을 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1-1-457

담당 : 장문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원고에게 폭언 및 신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피고는 30여 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거부할 경우 원고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원고는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가 자녀나 원고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웠다. 피고의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거주하던 원고는 이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여생의 안전과 복리를 보장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울산가정법원 2022. 10.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

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47

담당 : 문수종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 위자료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2017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자신의 전혼자녀와 함께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피고를 만나 2016년부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나 전혀 갚지 않았고, 생활비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필리핀에 찾아온 원고의 오빠에게도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는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이후

원고에 대한 생활비는 물론이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빌린 부채 때문에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8.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이 확정된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이 사건이 확정된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일정: 월 2회,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 나. 면접교섭장소: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 다. 인도방법: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원고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면서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 라. 협조의무: 원고는 피고의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사건본인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양육비이행명령 신청되자
미지급 양육비 2,160만원 지급**

법률구조 2022-1-101

담당 : 이승익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내용 : 신청인(여, 30대)은 피신청인(남, 30대)과 2011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피신청인이 매월 15일에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3년 1월에 40만 원,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13개월) 390만 원만을 지급한 이후로는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8년 미지급 양육비중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피신청인은 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미지급된 양육비는 2,160만 원에 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신청 취하(대구가정법원 2022. 7. 25.)

2022년 4월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미지급된 2,160만원을 지급함.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148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2000년경부터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인근에 동종업체들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사업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청인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하여 생기는 경쟁업체들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였다. 폐업 과정에서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무슨 일이라도 해서 변제하고자 했지만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구직이 어려웠다. 그렇게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약 9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

하고 있고, 4,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0. 12.)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교육을 위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조정**

법률구조 2022-1-149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법률혼 부부로 사건본인을 두었으며 2012년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상대방이 매월 말일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청구인은 실직으로 빚을 지게 되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50만 원으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다니던 학원도 중단하게 되었다. 반면 상대방은 월 소득이 400여만 원을 상회하여 고등학생인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1. 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1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독려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173

담당 : 김상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일용근로를 전전하다가 식당 개업을 위해 배우자는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신청인이 보증을 서게 되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사채와 신용카드대금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다. 적자가 장기 화됨에 따라 이자를 변제 할 소득이 부족하였고, 소위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 판정을 받았고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해야 하였다. 가족의 수입만으로는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상당했음에도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만 하였다. 온전치 못한 건강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육체노동을 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구청 계약직으로 2년간 일했으나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실직했고, 또 다른 병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면서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건강악화로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과 기초노령연금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0.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12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2월은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2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12월 7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3년 3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3년 3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